

##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Q&A

(국세청, 2007. 6.)

### ① 매입자발행(self-billing)세금계산서 제도란?

-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(일반과세자)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,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(매입자)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써, 2007.7.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.

[참 고]

\* 근거 법령: 조특법 §126의 4, 조특령 §121의 4, 조특칙 §52의 2

###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는?

-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.

### ③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?

-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(면세사업자를 포함\*)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.

\*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(과세사업자+ 면세사업자)로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증빙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발행대상에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할 경우,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\*를 추징당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.

### 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절차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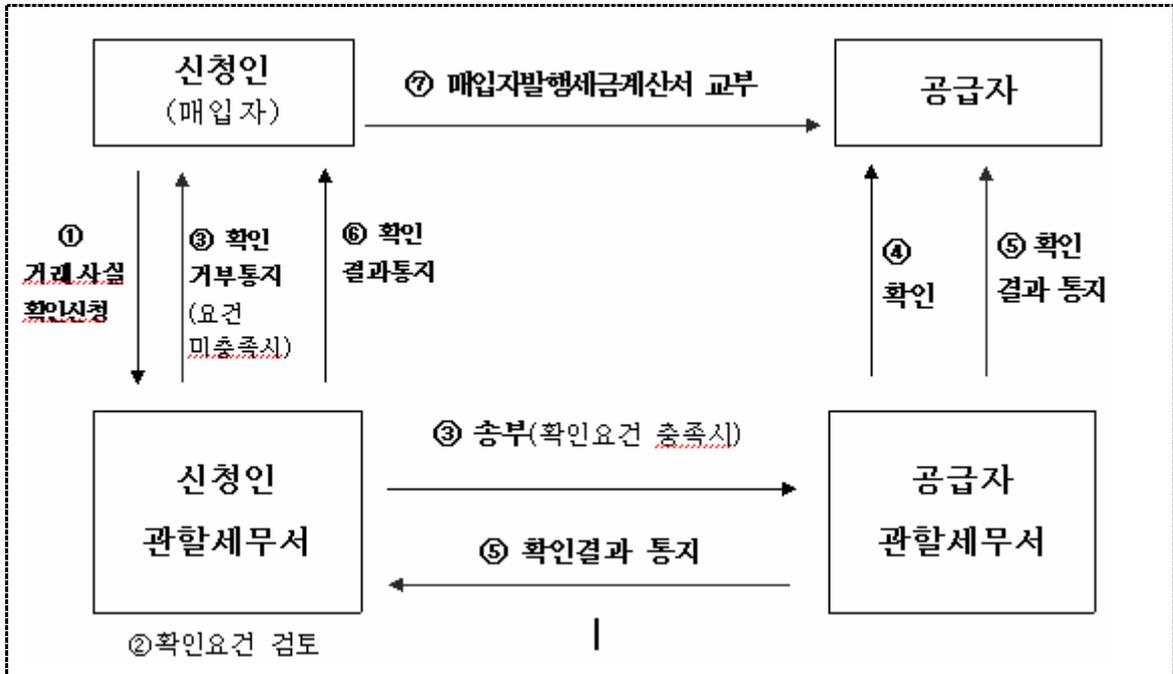
-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(신청인)는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함.
-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,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

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.

-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,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함.

다만,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.

**<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절차>**



**⑤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건수·금액 제한은 없나?**

-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.

-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여야 함.
-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만 가능하며,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이 거부됨.

**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의 효력은?**

-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,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.

⑦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?

-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%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,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.